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계획 수립·시행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8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계획 수립·시행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7. 10.

다. 회부연월일 : 2026. 7.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 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계획 수립·시행

가. 개정안의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3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행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우정사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대책

3.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

4.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훈련·감사 등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 시 탐지·대응·복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을 취급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정보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통제와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수탁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

	여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u>우정사업총괄기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⑥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⑦ <u>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u> (생략)	<u>제3조의3(우편물의 운송 명령)</u>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u>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u> (생략)	<u>제3조의4(우편물의 우선 취급)</u> (현행 제3조의3과 같음)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 ----- ----- -----.
1. <u>제3조의2제1항에</u>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	1. <u>제3조의3제1항에</u> ----- -----

한 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부 칙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우정사업은 전국적인 우체국망을 기반으로 우편, 예금, 보험 및 우체국망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집행업무의 대행·수탁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어,¹⁾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다수 취급하고 있음.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0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우편
- 나. 우편환
- 다. 우편대체
- 라. 우체국예금
- 마. 우체국보험
-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 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 아.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그런데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²⁾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23년 1,277건 → '24년 1,887건 → '25년 2,383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향후 공격 수법이 고도화되고 그 성공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³⁾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우정사업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침해시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우정사업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시도는 2018년 503건에서 2025년 11,703건으로 23배 이상 급증하였고,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9,422건의 침해시도가 발생하여 연간 침해시도는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임.

<우정사업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시도 연도별 추이>

(단위: 건, 2026년 6월말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월	소계
금융 ⁴⁾	42	247	459	780	1,339	1,226	2,850	3,890	3,068	13,901
우편	53	913	1,640	2,458	2,185	5,252	5,070	5,619	4,984	28,174
우정 사무	408	742	923	1,023	865	1,029	1,058	2,194	1,370	9,612
합계	503	1,902	3,022	4,261	4,389	7,507	8,978	11,703	9,422	51,687

자료: 우정사업본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5년 사이버 위협 하반기 동향 및 '26년 전망」, 2026. 1.

4)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

- 우정사업본부는 현재까지 우정사업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시도가 실제 침해사고 및 정보유출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침해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교해짐에 따라 향후 침해사고가 현실화될 위험성이 상존함.
- 이에 개정안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의 성격과 우정사업 관련 침해시도의 증가·고도화 추세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정사업총괄기관⁵⁾의 장(이하 “우정사업본부장”이라 함)이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정사업 관련 침해사고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시행성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⁶⁾을 계획 수립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정사업에는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0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우편뿐만 아니라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및 우체국망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집행업무의 대행·수탁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가 포함되나, 「우편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법률⁷⁾인 만큼, 동법에서 우정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특정 분야가 아닌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규정은 우정사업 전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훈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 계획”과 “내부 관리계획” 등이 수립·시행되고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우편
- 나. 우편환
- 다. 우편대체
- 라. 우체국예금
- 마. 우체국보험
-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의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 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 아.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우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 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는바, 개정안에서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신설할 경우 기존 계획과의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우정사업본부 자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⁸⁾가 수립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의 수립·이행 및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 및 감사 등이 포함되며, 각급 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내부 관리계획은 이를 구체화하여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 통제,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계획 수립·시행, 수탁자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 또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인정보 보호 대책, 사고 시 대응·복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관리·감독, 교육·훈련, 인력

8)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정사업본부 : 디지털혁신담당관

2. 소속기관

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장

3. 산하기관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함으로써, 기존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우정사업 분야 관련 전문성을 활용한 보다 충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 수립하던 계획은 주체를 장관급으로 상향⁹⁾함으로써 계획의 위상 및 규범력을 제고하는 측면은 있으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에서 그 범위, 절차, 고지사항, 파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함께, 기존 유사 계획의 체계, 계획 간 중복 방지, 사항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기본계획 포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만약 개정안과 같이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국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방향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두 계획 간 연계·통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9) 현재 ①우정사업본부 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수립하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감사 및 ②우정사업본부 각급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된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 통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은 개정안의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에도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음.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유사 내용 비교>

구분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기존 법령·행정규칙
계획의 내용	안 제3조의2(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우정사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대책 3.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 4.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훈련·감사 등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 시 탐지·대응·복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을 취급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정보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통제와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수탁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개인정보 보호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4.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 및 감사 5.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6.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7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제62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일부 발췌)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다운로드 기준 책정 등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주체 및 주기	- (기본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년마다 - (시행계획) : 우정사업본부장, 매년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년마다 -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매년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 (개인정보 보호 계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매년 - (내부 관리계획) : 각급기관의 장, 상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토대로 재작성

○ 셋째, 개정안은 규율 대상의 핵심 개념인 ‘개인정보’와 ‘비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계획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법령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체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¹⁰⁾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

될 여지가 있으나, ‘비밀’의 경우 「우편법」은 제3조¹¹⁾에 따른 비밀 보장 대상으로 우편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의 기본계획은 우체국예금·보험 등 우정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함.

○ 특히, 우체국예금·보험 거래정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대상에 해당하는데,¹²⁾ 개정안의 ‘비밀’이 이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불분명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대화의 비밀 등 다른 법률상 비밀 개념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함.

○ 핵심 개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범위와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범위 또한 불명확해져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1) 「우편법」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정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관련 법률의 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 취지에 공감하나, 「우편법」상 목적·소관은 우편역무로 한정되어 있어 우정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계획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우편법」에 근거를 신설하더라도, 비밀 보장을 위한 우편물 내용의 비밀(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 비밀(금융실명법), 개인 신용정보(신용정보법) 등 개별 법령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법취지 달성이 곤란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정사업을 포함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이행 중이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매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 중에 있으므로, 타 법령과의 중복·규율체계 혼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우정사업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므로 별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실익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 국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향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5